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social media of judges

김도훈**
Kim, Do-Hoon

목 차

- I. 서설
- II.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과 그에 따른 문제
- III.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규범과 그 개선방안
- IV. 결어

국문초록

최근 소셜 미디어는 개인, 기업, 국가기관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활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법관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는 법관의 특수한 지위와 소셜 미디어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문제 발생가능성에 근거하여 이미 소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에서 법관을 배제시키는 것은 법관의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 포함된 자료가 대표적인 증거방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법관은 오히려 이에 대해

논문접수일 : 2016. 01. 27.

심사완료일 : 2016. 02. 29.

게재확정일 : 2016. 02. 29.

*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2015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법학박사·덕성여자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면을 고려할 때 법관에게 소셜 미디어는 불가근(不可近)의 대상이지만, 소셜 미디어가 주된 증거 방법이 되어가고 있다는 면을 고려할 때 법관에게 소셜 미디어는 불가원(不可遠)의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규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라 생각한다. 또한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법관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불가근불가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법관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전문성을 구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따른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고, 소셜 미디어가 증거 방법이 된 경우에도 법관의 적절한 판단과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첫째, 소셜 미디어의 의미, 소셜 미디어의 특성에 따른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인식 및 그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둘째,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해 적용 가능한 현행 규범을 정리하였다. 셋째, 법관의 공정성, 품위 유지 의무에 관한 규범, 그리고 법관의 특정 행위에 대한 제한에 관한 규범의 적용과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넷째,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과 그에 따른 법관의 기피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제어 : 법관, 법원, 소셜 미디어, 법관윤리강령, 민사소송법

Ⅰ. 서설

현재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Facebook) 같은 소셜 미디어 내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는 단순히 개인의 선호를 넘

어 각종 기업과 국가기관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¹⁾ 한국 미디어패널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디어 서비스 이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SNS 이용률은 연평균 8% 포인트 가량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30, 40, 50대의 SNS 이용률이 10% 포인트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10, 20대의 이용률 증가세는 둔화되어 10대에서 50대까지 SNS의 이용이 보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전체 응답자의 39.9%가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이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활용 증가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³⁾

하지만 이 같은 시대의 흐름과는 별개로 법관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 대해서는 법관의 품위유지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법관의 기피 내지 회피사유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 국민의 사법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는 소셜 미디어가 가진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인 “공유성”으로 인해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널리 전파되어 존속할 수 있고, 맥락 없이 특정 표현만이 사용자의 의사와 전혀 다른 형태로 해석되기도 하며,⁴⁾ 공유의 대상에는 지극히 사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2011년 일부 법관들이 소셜 미디어에 쓴 글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큰 관심과 논란이 야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바 있다. 이후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법관 윤리적 관점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2년 5월 17일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공표한 바 있다.⁵⁾ 그리고 2015년에도 현직 법관이 수년에 걸쳐 익명

1) 김도훈,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고찰”, 『과학기술법연구』 제20집 제1호 (2014), 44면.
 2) 김윤아, “SNS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KISDI STAT Report』 15-03(2015).
 3) 미국의 경우 2015년 7월 현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의 7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 <http://www.pewinternet.org/three-technology-revolutions/> 방문일: 2015년 12월 29일.
 4) 이종기,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셜미디어 사용 - 미국 연방법원 행위규범위원회의 권고의견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사법소식』 제94호(2014), 35면.
 5)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보도자료(2012년 5월 17일) <http://www.scourt.go.kr/portal/news> 방문일: 2015년 12월 29일.

으로 “막말 댓글”을 달아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⁶⁾ 법관의 적절한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관련사건 이후 2015년 3월 11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권고의견 제10호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을 의결하고 공표한 바 있다.⁷⁾ 즉 지금까지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문제는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결이 시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만으로는 법관의 소셜 미디어 활용과 관련한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결국 법관은 이와 같은 권고에 따르지 않더라도 관련 현행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을 방치할 경우 국민의 사법불신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⁸⁾ 하지만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의사소통의 수단인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결국 이와 관련된 현행 법률과 권고의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소셜 미디어의 의의와 소셜 미디어의 특성에 따른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인식 및 그 현황을 간략히 정리한 후,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현행 규범의 주요내용과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6) 현직 판사 ‘막말 댓글’ 파문...“재판 못 말긴다” 여론 비등, 2015년 2월 12일자 NEWSIS 기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12_0013475980&cID=10201&pID=10200 방문일: 2015년 12월 29일.

7)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보도자료(2015년 3월 11일) <http://www.scourt.go.kr/portal/news> 방문일: 2015년 12월 29일.

8) 이미 사법불신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법관의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사용 역시 사법불신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2015 법원 신뢰도 대국민 여론조사’결과 재판 절차와 판결의 공정성, 판사의 독립적 판결 여부 등 모든 문항에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못 믿겠다”뿌리깊은 사법 불신...국민 71% “재판 불공정”, 2016년 1월 1일자 머니투데이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22413492882320&outlink=1> 방문일: 2016년 1월 4일.

II.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과 그에 따른 문제

1. 소셜 미디어의 의의와 특성

소셜 미디어란 의견·생각·경험·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틀과 플랫폼을 말하는 것으로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인스턴트 메시지보드, 팟 캐스트, 위키,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등이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고 있다.⁹⁾ 이와 같은 소셜 미디어는 특정 매체나 대상을 의미하기 보다는 기술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는 용어로 평가하는 것¹⁰⁾이 일반적이며, 문자, 음성, 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를 공유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사용은 법원에게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¹¹⁾ 특히 소셜 미디어가 가진 참여성, 공유성, 접근성 등의 대표적인 특성들은 법관이 이를 사용할 경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을 예로 들어 그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소셜 미디어는 “사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이를 타인과 “공유”한다는 특성¹²⁾을 갖고 있으며, 온라인상으로 비교적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접근이 가능하여 “접근성”¹³⁾이 극대화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소셜 미디어는 일기, 편지, 사진앨범을 대체해 오고 있으며,¹⁴⁾ 이는 주로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

9) 정보통신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http://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
방문일: 2016년 1월 4일.

10) Adam Cohen, Social Media and Ediscovery: Emerging Issues, 32 Pace L. Rev. 289, 289 (2012).

11) Thomas Roe Frazer II, Social Media: From discovery to marketing-A primer for lawyers, 36 Am. J. Trial Advoc. 539, 570(2013).

12) Benita P. Collier, Privacy on the Internet: What is Reasonable in a Wired World?, 53 Prac. Law. 17, 22(2007).

13) 김도훈, 앞의 논문, 53면.

14) Working Group on Electronic Document Retention & Production, Primer on Social Media, The Sedona Conference, 57(October 2012).

다는 점에서 “사적인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는 “친구 맺기(friending)” 등을 통해 타인과 소통의 수단으로 “공유”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를 온라인상에서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정보의 공개범위를 별도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누구든지 당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 역시 극대화되어 있다. 또한 이 같은 특성들이 함께 발현될 경우 사적인 정보가 누군가의 접근에 의해 수집되고 공유라는 속성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2. 소셜 미디어의 특성에 따른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의 문제

앞서 언급한 소셜 미디어의 참여성, 공유성, 접근성과 같은 특성은 일반인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오용 내지 악용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처럼 일반인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의 특성은 법관의 특수한 지위나 재량권 등으로 인해 법관이 이를 사용할 경우 더욱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관은 그의 개인적인 행동과 모습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지위의 특수성이 소셜 미디어의 특성과 만나 법관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더욱 큰 문제가 될 가능성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법관의 폭넓은 재량권 역시 소셜 미디어의 특성과 어우러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구체적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법관 내지 재판부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은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상적인 기준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법관에게는 이를 적절히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처럼 법관은 재량권을 가진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소셜 미디어에 사소한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 불필요하게 오용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경우 그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관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일상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였는데, 해당 내용을 토대로 법관의 성향이

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그 이유나 법관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로 인해 법관의 판단에 그러한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소셜 미디어의 “공유”라는 속성으로 인해, 법관과 친구 맺기 등을 통해 일정한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가 특정 사건의 소송관계인이 된 경우, 법관과 해당 특정인의 관계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정도의 긴밀한 관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은 이를 당해 법관에 대한 기피이유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소송지연이나 비용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소셜 미디어의 “접근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법관의 사적인 정보 등이 법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에 의해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맥락은 없이 부적절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특정 표현이나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 오용 내지 악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공유라는 특성이 더해짐으로 인해 당해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 확대 재생산 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 경우 당해 내용을 바로잡거나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이미 일부 발생한 바 있고,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실무상 변호사들이 법관의 소셜 미디어 역시 자료수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¹⁵⁾을 감안할 때 지적인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실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3.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 현황 및 이에 대한 인식

현재 국내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선행연구 중 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결과에서 비교적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이에 따르면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가능하다고 답하였고, 10% 미만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¹⁷⁾ 그리고 소셜 미디어와

15) Beth C. Boggs, Misty L. Edwards, Does what happens on facebook stay on facebook? *Discovery, Admissibility, Ethics, and Social Media*, 98 Ill. B. J. 366, 366(2010).

16) 설문조사는 2011년 5월 수원지방법원 판사 107명 및 법원 내 사법정보화연구회 커뮤니티 회원을 상대로 실시되었다; 김태형, “법관의 회피 - 소셜 미디어 사용을 중심으로”, 『사법』 17호(2011), 125면 이하.

관련된 통일적 기준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주체(판사와 사법정보화연구회) 간에 다소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법정보화연구회의 경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온 반면, 수원지방법원 법관들의 경우 불필요하다는 응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⁸⁾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와 관련하여 공정한 재판을 위한 회피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다수가 회피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

국내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법관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나 비율을 확인할 수 없지만, 설문에 응한 대다수의 법관들은 소셜 미디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재판이 불공정해 질 것을 우려하여 회피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아니하나,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통일적인 기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고민과 논의는 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비교적 상세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현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CCPIO (the Conference of Court Public Information Officers)의 2014년 설문조사 보고서는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관들은 변호사나 소송관계인에 비해 소셜 미디어의 필요성이 덜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관들이 일상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²⁰⁾고 한다. 하지만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업무영역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 공무원의 경우 소셜 미디어의 사용을 경계하고 있고, 응답자의 4분의 3이 그들의 업무영역에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페이스북 사용에 따른 사생활(Privacy) 문제를 지적하는 응답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²¹⁾으로 나타났

17) 위의 논문, 126-127면.

18) 위의 논문, 128-129면.

19) 위의 논문, 127-128면.

20) Thaddeus A. Hoffmeister, *Social Media in the Courtroom*, Praeger, 137(2014).

21) 2013년 30%였으나 2014년 41%로 증가하였다; CCPIO, 2014 CCPIO New Media Survey A Report of the Conference of Court Public Information Officers, 4(2014) http://ccpio.org/wp-content/uploads/2014/08/CCPIO-New-Media-survey-report_2014.pdf 방문일: 2016년

다.²²⁾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래와 같이 사생활과 윤리적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활용의 제한, 기술적인 한계 그리고 익숙치 않음을 원인으로 답한 예도 있었다.²³⁾ 즉 업무영역에서 법관 내지 법원 공무원의 소셜 미디어 활용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²⁴⁾

Why Don't Use	Privacy Concerns	Ethical Concerns	Technical Limitations	Limited Usefulness	Unfamiliar with It
Facebook	41.5%	33.5%	4%	17%	4%
Google+	27%	18%	3%	19%	33%
LinkedIn	29.5%	24%	2%	27%	17.5%
Twitter	27%	21%	4%	27%	21%
YouTube	28%	22%	6%	33%	11%
Instagram	24%	17%	3%	24%	32%
Pinterest	20%	15%	3%	31%	31%
SnapChat	21%	14%	2%	23%	40%

또한 동 설문조사는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발생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설문내용 중 법관이 윤리적 문제없이 페이스북 프로파일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44.5%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나, 이는 2013년에 비해 5% 포인트가 하락한 수준이며, 응답자의 27.1%가 부정적으로 답했고, 28.4%가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²⁵⁾ 그리고 법관이 페이스북 이외의 다른 소셜 미디어 사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발생가능성에 여부에 대한 답변 역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지

1월 4일.

22) Ibid.

23) Ibid., at 19.

24) Ibid.

25) Ibid., at 24.

만 페이스북에 비해서 윤리적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지난 2010년 동일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수치와 비교해 볼 때 법관이 윤리적 문제없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다만 현재에도 다수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부정적인 입장 역시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이 윤리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뉴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 업무에 있어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뉴미디어 교육이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약 90%가 필수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⁸⁾

미국의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업무영역에서는 대다수가 소셜 미디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으며, 여전히 소셜 미디어 사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단순히 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닌 교육을 통한 문제 예방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Ⅲ.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규범과 그 개선방안

1.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규범

오늘날 소셜 미디어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법관 역시 외부세계와 지속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법관의 기질을 풍부하게 하고 어려운 결정을 하는 법관의

26) Ibid., at 25.

27) 2010년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법관의 경우 응답자의 24%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CPIO, New Media and the Courts - The current status and a look at the future (2010) <http://ccpio.org/wp-content/uploads/2012/06/2010-ccpio-report.pdf> 방문일: 2016년 1월 4일.

28) CCPIO, Supra Note 21, at 26.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다²⁹⁾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현 시점에서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체를 금지하는 규범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참여와 공유가 일반화되기 이전의 상황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은 스스로를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을 정도³⁰⁾로 법관의 지위가 특수하다는 사실과 소셜 미디어가 가진 특성이나 파급력이 기존의 의사소통 수단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규범으로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이하 “권고의견”이라 한다.) 등을 들 수 있고,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이 문제가 될 경우 적용될 규범으로 「법관징계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법관윤리강령」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규범의 적용과 그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본다.

2. 법관의 공정성, 품위 유지 의무(추상적 의무의 부과)

가. 관련 규범의 주요내용

「법관윤리강령」에서는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제2조).”,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제3조제1항).”, “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의

29) 이현환, “미국의 법관윤리장전(모델) 연구(I) - 기구와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2호(2005), 161면.

30) 위의 논문, 161면.

활동을 할 수 있다(제5조제1항).”고 정하여, 법관의 품위 유지와 공정성 그리고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여러 규범에서도 동일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권고의견 제7호의 경우, “둘째, 법관은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여 품위를 유지하고”라고 밝히고, “다섯째, 법관은 SNS 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라고 다시 한 번 품위 유지를 강조하는 한편 “셋째, 법관은 SNS 상에서 소송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에는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외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³¹⁾고 정하여 역시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권고의견 제10호는 법관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공개대상이 제한된 폐쇄된 인터넷 공간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헐박적 표현,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을 먼저 밝히고,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금 “모든 법관은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라도 그것이 어떤 경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하여,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³²⁾ 이처럼 여러 규범에서 중복적으로 법관의 공정성과 품위 유지가 강조되고 있고, 이의 위반은 「법관징계법」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법관징계법」 제2조제2호는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나. 관련 규범의 적용

이와 같은 규범에 따라 법관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공정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활동 역시 품위 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아가 법관이 인터넷상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공정성과 품위 유지 의무는 동일하게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무를

31)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보도자료(2012년 5월 17일).

3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보도자료(2015년 3월 11일).

위반한 경우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소송은 국가구제의 대표적인 수단이고,³³⁾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는 주체는 법관이다. 따라서 법관의 판단은 곧 국가의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즉 법관 역시 일반 사인이지만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로 인해 법관 개인의 행동과 모습이 국민의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관의 지위 그리고 법관은 국민에 대한 규범적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³⁴⁾는 등의 주장을 감안할 때 법관은 업무상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 지위에 상응하는 품위 역시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관의 공정성과 품위 유지 의무는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서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관련 규범의 한계

문제는 사적인 정보, 공유, 접근성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법관이 일반 사인으로 생활하고 지인들과 소통하는 영역에서도 공정성과 품위 유지를 요구받게 되었고, 공정성과 품위 유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먼저 소셜 미디어의 특성에 따른 사적인 영역에서의 공정성이나 품위 유지와 관련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법관의 공정성과 품위 유지는 필요하다. 하지만 법관 역시 일반 사인으로서 누려야 할 사적인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영역에서도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과 품위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의 특성상 법관이 이를 사용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정성이나 품위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법관징계법은 징계

33) 자력구제의 한계로 인해 국가구제의 제도 즉 비용, 시간, 불확실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국가가 맡아 평화적으로 법에 따라 권리를 실현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그것이 곧 민사소송제도이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2015), 2면.

34) 이헌환, 앞의 논문, 160면.

사유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로 정할 뿐 이에 관한 법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한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법관이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품위 손상 혹은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리게 되면 법관에게 사소한 과실이 있거나 과실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법관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성이나 품위 유지의 적정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행 규범과 같이 공정성이나 품위 유지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 적정 수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앞서 정리한 「법관윤리강령」 등의 규범에서는 공정성이나 품위 유지 의무를 요구할 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 이는 좀 더 구체성을 떨 수 있는 권고의견의 경우도 초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권고의견 제7호의 참고사항에는 당해 권고의견이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추상적·보편적 특성을 가진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하여 법관에게 좀 더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공하는 것임이 부연하여 설명되어 있다.³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라고 설명되어 있을 뿐 품위 유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특정행위가 공정성이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평가 내지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판단이나 평가가 쉽게 얻어지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법관의 구체적인 개별 소셜 미디어 사용행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축적되기 전까지 법관은 스스로의 기준 및 판단에 따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공정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 관련 규범에 대한 개선방안

이러한 현실로 인해 “소셜 미디어 관련 기술이 급변하고 있고 이는 새로운

35)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보도자료(2012년 5월 17일).

윤리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관련된 사실관계에 따라 그 윤리적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획일적인 접근방식을 택할 수 없고, 법관은 관련된 윤리 문제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한다.”는 주장으로 결론을 내리는 글³⁶⁾도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 역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고민이 추가로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안은 될 수 있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소셜 미디어 사용을 위해 위원회에 일일이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법관이 주변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 없이 단순히 특정행위에 대한 가능여부를 질의한 경우 그 상황만을 전제로 한 위원회의 자문이 유효적절할 수 있는지, 자문요청에 따른 위원회의 답변이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법관이 위원회의 답변에 따라 행동하였으나 추후 당해 행위가 문제된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등과 같이 해결해야 할 후속 과제가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초에 ‘막말 댓글’로 관심을 받았던 법관 역시 사표가 수리되어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으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³⁷⁾ 이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시금 권고의견 제10호를 발표하였고, 당해 내용에는 법관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공개대상이 제한된 폐쇄된 인터넷 공간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협박적 표현,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³⁸⁾이라고 정하여 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였고, “모든 법관은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라도 그것이 어떤 경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하여,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함”³⁹⁾이라고 정하여 소셜 미디어

36) 이종기, 앞의 논문, 43면.

37) 대법원, ‘막말 댓글’판사 징계 없이 사표 수리, 2015년 2월 14일자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37408 방문일: 2016년 1월 4일.

38)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보도자료(2015년 3월 11일).

어의 특성을 항상 염두에 둘 것(준수해야 할 행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공정성이나 품위 유지에 관한 행위규범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할 경우 언제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문제 발생 시 법관 개인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거나 권고의견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적 조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여 법관의 소셜 미디어 등 인터넷 관련 매체의 사용 시 공정성이나 품위 유지 위반행위를 예시의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부분적으로라도 조속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법관의 특정행위에 대한 제한(구체적 행위의 제한)

가. 관련 규범의 주요내용

「법관윤리강령」에서는 “법관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제3조제2항).”,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제4조제4항).”,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제4조제5항).”,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제5조제2항).”,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제5조제3항).”,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제7조제2항).”고 정하여 법관의 특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권고의견 제7호의 경우, “넷째, 법관은

39) 위의 자료.

SNS 상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제한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조인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⁴⁰⁾고 정하여 역시 특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동 권고의견의 경우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화되었다기 보다는 「법관윤리강령」 제4조제5항과 제5조제3항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리고 권고의견 제10호는 법관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공개대상이 제한된 폐쇄된 인터넷 공간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성별이나 인종·나이·지역 등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혹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합의 내용이나 재판절차에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사건 내용, 소송관계인 등의 신상 정보 등도 공개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한 재판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재판의 내용에 대한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견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하고 있다.⁴¹⁾ 동 권고의견 역시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구체화되기는 하였으나 「법관윤리강령」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제5조제3항의 내용에서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나. 관련 규범의 적용

법관은 위 규범에 따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여러 가지 특정행위들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소셜 미디어의 대표적인 특성인 “공유성”으로 인해 권고의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특정표현이나 특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된다. 이외에도 법관윤리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특정행위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 규범들을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적용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관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특정표현이나 의견표시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법관은 성별이나 인종·나이·지역 등에 따른 편

40)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보도자료(2012년 5월 17일).

41)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보도자료(2015년 3월 11일).

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혹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⁴²⁾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⁴³⁾ 자신이 한 재판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재판의 내용에 대한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⁴⁴⁾ 추가로 지인과의 일상적인 의사소통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 역시 삼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둘째, 법관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특정정보의 제공 내지 공개가 제한된다. 법관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⁴⁵⁾ 그리고 법관은 자신이 담당하 사건에 합의 내용이나 재판절차에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사건 내용, 소송관계인 등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⁴⁶⁾ 셋째, 법관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특정행위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법관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⁴⁷⁾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소셜 미디어 상으로 댓글을 달거나 의견을 주고받는 일상적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관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⁴⁸⁾ 또한 법관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⁴⁹⁾

42) 「법관윤리강령」 제3조제2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0호.

43)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법관윤리강령」 제4조제5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7호.

44)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0호.

45) 「법관윤리강령」 제5조제3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7호의 경우 이를 구체적 사건에 관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46)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0호.

47) 「법관윤리강령」 제4조제4항.

48) 「법관윤리강령」 제5조제2항.

49) 「법관윤리강령」 제7조제2항.

마지막으로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법관징계법」 제2조제1호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법관의 당해 행위가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거나⁵⁰⁾ 개별법에 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 관련 규범의 한계

법관의 특정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던 기존 규정이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한 권고의견에 따른 특정행위 제한이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1) 특정표현이나 의견표시의 제한

먼저 개인의 일기와 같은 사적인 정보를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법관으로 하여금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특정표현이나 의견표시를 오프라인에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의 제한을 두고 법관 역시 표현의 자유를 향유한다는 점에서 법관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 나눈 사적 대화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⁵¹⁾ 하지만 법관의 지위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표현의 사용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제한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 정도나 방법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어야 한다.⁵²⁾⁵³⁾ 「법관윤리

50) 이에 관해서는 주로 소셜 미디어 사용에 따른 명예훼손에 관한 논의를 일부 확인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공연성”, 그리고 그 기준으로 활용되는 결과의 전파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리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51) 문재완,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2012), 147면.

52) 법관과 같이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그러한 지위가 설정된 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일반 시민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제한은 설정된 목적 달성을

강령」은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규범이 아니며, 권고의견 역시 법관의 특정행위가 문제가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연원을 갖고 있어 적절한 제한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인의 경우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 자신의 일상을 자유롭게 공유한다. 이에 비해 법관의 경우 일상이 대부분 공개 내지 공유가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내용의 범위는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역시 제한을 하는 것은 결국 소셜 미디어의 사용 자체를 막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고, 이에 좀 더 세밀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2) 법률적 조언 등 정보제공의 제한

다음으로 「법관윤리강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법관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권고의견의 경우 “구체적 사건”이라는 전제를 추가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조인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적정선에 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일체의 법률적 조언이나 법조인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금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 수준에서는 허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관윤리강령」 제5조제3항을 반대해석해 보자면,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없는 경우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단서가 없는 권고의견은 마치 확일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논문, 148면.

- 53)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은 SNS 상에서 발생하는 법관의 행동을 규제하려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으로는 노동일, “법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경희법학」 제47권 제2호(2012), 40-41면.

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를 생략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던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3) 재판업무 외 소송관계인과의 면담 및 접촉 제한

마지막으로 적용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관윤리강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법관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접촉”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제한의 범위가 달라진다. 이를 오프라인상의 접촉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온라인상의 접촉 역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법관은 당해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상 대학교 동창인 법관 A와 변호사 B가 “친구”로 등록되어 있었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은 없었지만 서로의 프로필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 B가 담당하는 사건이 법관 A에게 배정된 경우 법관이 그와 같은 상태를 적시에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을 경우 당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다. 우리의 경우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이 없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법관윤리강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법관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때 타인의 법적 분쟁에 대한 관여의 수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 수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의 수준 등이 소셜 미디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 역시 필요해 보인다.

라. 관련 규범에 대한 개선방안

(1) 특정행위의 구체화와 교육의 필요성

앞서 한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규범은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정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충분히 수용해 낼 만큼 구체적이거나 세밀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제한하고 있는 해당 행위가 법관의 소셜 미디어의 사용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의 상정과 그에 따른 구체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식은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의 마련이 적절하고, 해당 규범의 구속력 부족이나 법관의 재량에 따라 발생가능한 문제는 소셜 미디어 활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법관은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⁵⁴⁾이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범의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특정표현이나 의견표시를 제한함에 있어 법관의 직무에 관한 내용은 엄격하게 제한하되, 온전히 사적인 영역의 내용은 외관상 오해의 여지가 있고 그러한 외관상 오해에 법관이 기여한 경우에 한해 제한을 하는 등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내지 지침에서는 금지되는 표현의 구체적인 실례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⁵⁵⁾ 또한 실례의 적시를 통한 구체화는 앞서 살핀 타인의 법적 분쟁에 대한 관여의 수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 수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의 수준의 구체화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법률적 조언 등 정보제공의 엄격제한

다음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법률적 조언이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좀 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셜 미디어의 공유성이나 지속성 등을 감안할 때 해당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오

54)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7호.

55) 법관이나 군인 등 특수한 직역에 근무하는 자의 정치적 표현과 관련하여 특정 직업윤리와 관련 법간의 조화를 피할 필요가 있고 전면적인 법제정비에 앞서 직군별로 내부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는 지성우, 최윤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의 원칙에 대한 시론적 고찰 - 트위터의 이용사례 분석을 기초로 한 내용규제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3호(2013), 255면.

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법관이 조언의 근거로 삼은 내용과 재판의 근거로 삼은 내용이 동일하기 어렵고, 그 평가 역시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법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온라인상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실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면 소송관계인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는 오프라인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권고의견이 이와 같은 의도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법관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법률적 조언 등 정보제공은 확실히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3)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친구 맺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법관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친구 맺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한 가이드라인 내지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할 만한 예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친구 맺기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지침을 들 수 있다.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미국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대다수의 주에서는 법관이 변호사들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⁵⁶⁾ “친구 맺기” 역시 제한하지 않는다.⁵⁷⁾ 이에 비해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메사추세츠주, 그리고 오클라호마주에서는 법관과 특정 변호사가 친구 맺기가 되어 있는 경우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다.⁵⁸⁾ 마지막으로 뉴욕주의 경우 이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⁵⁹⁾ 소셜 미디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친한 경우에만 친구 맺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친구 맺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보다는 최초 친구 맺기를 수행한 이후 방치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친

56) Thaddeus A. Hoffmeister, *Supra Note*, at 138.

57) 노동일, 앞의 논문, 38면.

58) Thaddeus A. Hoffmeister, *Supra Note*, at 139.

59) *Ibid.*

구 댓기를 실제 오프라인에서 친구 관계를 맺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친구 댓기에 따라 형성된 외관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법관에게 재량을 줄 것인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법관의 적절한 소셜 미디어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 소셜 미디어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할 때 친구 댓기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여전히 친구 댓기에 따라 형성된 외관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는 해결의 대상이다. 이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법관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되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소송관계인 내지 그와 같은 관계가 예상되는 경우 단순 친구 댓기 이상의 소통이 진행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롭게 친구 댓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기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경우 해당 소셜 미디어의 특성상 법관의 적극적인 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관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방어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공유”라는 속성을 가진 소셜 미디어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타인이 글을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인 내지 법관과 친구 댓기가 되어 있는 누군가가 법관의 소셜 미디어에 글을 쓸 수 있다. 이때 그 특정인이 부적절한 언행이나 표현을 한 경우 해당 행위가 법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오해나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관은 자신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에 게시되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특정인이 법관의 소셜 미디어에 부적절한 내용을 게시한 경우 법관은 이를 스스로 삭제하거나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관이 소셜 미디어에 특정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법률이나 판례의 소개 등 법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할 경우에도 그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관이 소셜 미디

어에 게재한 내용은 신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앞서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오해나 다툼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관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는 적극적인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과 법관의 기피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법관징계법」상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별개로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외관이 형성된 경우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상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사유⁶⁰⁾가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상 기피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관의 기피

기피제도란 법관에게 민사소송법 제41조에 정한 제척이유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판으로 당해 법관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⁶¹⁾ 법관의 제척이유가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과 달리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의 기피이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제척제도를 보완하여 재판의 공정을 좀 더 충실하게

60) 참고로 김태형, 앞의 논문은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법관의 회피”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관은 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의미있는 접근법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은 법관의 회피가 아닌 법관의 기피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하였다. 첫째, 법관의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소셜 미디어 사용의 경우 제척사유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질적으로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법관의 회피는 법관이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법관의 회피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수단에 가깝다.

61) 이시윤, 앞의 책, 84면; 강현중, 「신민사소송법강의」, 박영사(2015), 85면.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피이유로 인정되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단순히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주관적인 의심을 갖는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사람의 입장에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인정될 객관적인 사정이라야 한다.⁶²⁾ 구체적으로 법관이 당사자의 일방과 친우, 내연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경우, 사건의 승패에 관하여 경제적으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 그 예로 언급되고 있다.⁶³⁾

다만 실무상으로 법관은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다고 생각할 때 사전에 스스로 사건에서 회피하는 조치를 취하여 그 사건의 담당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⁶⁴⁾ 법원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을 거의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⁶⁵⁾

나.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과 기피이유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법관윤리강령」 등의 규범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기피이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피이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법관의 능력·건강·신조·품행 등 법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적 사정은 탄핵·징계 사유는 되지만 기피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⁶⁶⁾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

62) 대결 1992. 12. 30. 92마783(공1993, 608).

63) 김능환 외, 「주석 민사소송법(1)」, 한국사법행정학회(2012), 285면.

64) 위의 책, 284면.

65) 사법연감에 의하면 제척·기피신청이 인용된 건수는 2007년 1건, 2008년 0건, 2009년 0건, 2010년 1건, 2011년 0건에 불과하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논의로는 표호건, “기피제도의 운영 현황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2012) 참조.

66) 김능환 외, 앞의 책, 285-286면; 이시윤, 앞의 책, 86면;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제2판, 법문사(2007), 96면.

관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제한되는 특정표현이나 의견표시를 한 경우 역시 기피이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발표한 것이나 과거에 논문으로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견해나 소감을 발표한 것 역시 기피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⁶⁷⁾ 마지막으로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과 친구 맺기를 한 경우 기피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는 없지만⁶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관이 당사자의 일방이나 소송대리인과 친우관계 등의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 기피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적용할 경우 법관이 일방 당사자나 소송대리인과 친구 맺기가 되어 있는 경우 기피이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할 경우 불필요한 기피신청을 막기 위해 법관은 친구 맺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 맺기를 오프라인에서 친구 관계를 맺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법관의 적절한 소셜 미디어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 소셜 미디어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친구 맺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기피이유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만약 이를 인정할 경우 그에 따른 기피신청이 남용될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⁶⁹⁾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그 친밀도는 어느 수준인지 등 구체적인 소통현황에 따라 달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를 구체화할 만한 척도를 제시하기는 어렵고, 결국 법관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실무상으로는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법관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회피제도를

67) 대결 1982. 11. 5, 82마637; 김능환 외, 위의 책, 286면; 이시윤, 위의 책, 86면; 정동윤·유병현, 위의 책, 96면.

68) 우리의 경우 기피를 인정하는 예가 거의 없어 교과서에서 소개된 기피이유에 해당하는 예는 대부분 독일이나 일본의 예이다.

69) 현 시점에서 주관적 사정만으로 기피신청을 하는 예가 많아 법관에 대한 괴롭힘이나 소송지연의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으로는 표호건, 앞의 논문, 366면.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어

이상에서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규범의 주요내용과 적용 그리고 그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좀 더 복합적인 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우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소통은 당분간 확대 지속되어 광범위하게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서 법관을 배제시키는 것은 법관의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 포함된 거의 모든 내용이 분쟁발생 시 증거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⁷⁰⁾ 실제로 증거개시절차를 가진 미국의 경우 이미 실무상 거의 모든 유형의 소송에서 소셜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자료요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⁷¹⁾⁷²⁾ 따라서 법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경우 법관의 해당 미디어에 대한 이해수준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의 흐름을 감안할 때 증거방법으로써의 소셜 미디어는 더욱 중요성이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평가를 위해서는 법관이 이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제한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즉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

70) Christopher E. Prker, Travis B. Swearingen, "Tweet" me your status: Social media in discovery and at trial, 59-FEB Fed. Law. 34, 34(2012).

71) Shira A. Scheindlin, Daniel J. Capra, ELECTRONIC DISCOVERY AND DIGITAL EVIDENCE CASE AND MATERIALS Second Edition, WEST, 294(2012).

72) 물론 우리의 경우 민사상 증거개시절차의 부재로 소셜 미디어가 민사증거법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나, 법원이 한국형 민사증거개시제도 도입을 공언한 시점에서 동 제도 도입과 함께 다양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면을 고려할 때 법관에게 소셜 미디어는 불가근(不可近)의 대상이지만, 소셜 미디어가 주된 증거방법이 되어가고 있다는 면을 고려할 때 법관에게 소셜 미디어는 불가원(不可遠)의 대상인 것이다.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법관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불가근불가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라 생각한다. 이 같은 교육은 비단 소셜 미디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에게 지나칠 정도로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 전문성 부재는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사회의 변화·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법관이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시의적절하게 구비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⁷³⁾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 법관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전문성을 구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따른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고, 소셜 미디어가 증거방법이 된 경우에도 법관의 적절한 판단과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법원”의 소셜 미디어 적절한 활용 역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소셜 미디어는 대다수의 국가기관에서 홍보와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법원의 소셜 미디어 사용까지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미국 역시 초창기에는 법원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 많았지만⁷⁴⁾ 최근에는 그 활용이 매우 활발해 지고 있다.⁷⁵⁾ 우리 역시 사법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표적인 소통의 수단인 소셜 미디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시의적

73) 원론적으로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자유심증주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74) Norman H. Meyer, Jr., Social Media and the Courts: Innovative Tools or Dangerous Fad? A Practical Guide for Court Administrators, International Journal for Court Administration, 22(2014) http://www.law.du.edu/documents/msla/Social-Media-and-the-Courts-NMeyer_IJCA-v6-no1-June-2014.pdf 방문일: 2016년 1월 13일.

75) 미국의 경우 상당수 주(31개)의 각급법원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가 활용되고 있다; <http://www.ncsc.org/Topics/Media/Social-Media-and-the-Courts/State-Links.aspx?cat=Social%20Media%20and%20the%20Courts> 방문일: 2016년 1월 13일.

절한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비단 소셜 미디어 외에도 사법행정의 선진화를 통한 사법정의실현을 위해 법원은 새로운 기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⁷⁶⁾

참고문헌

- 강현중, 「신민사소송법강의」, 박영사(2015)
김능환 외, 「주석 민사소송법(1)」, 한국사법행정학회(201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2015)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제2판, 법문사(2007)
- 김도훈,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고찰”, 「과학기술법연구」 제20집 제1호(2014)
김윤아, “SNS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KISDI STAT Report」 15-03 (2015)
김태형, “법관의 회피 - 소셜 미디어 사용을 중심으로”, 「사법」 17호(2011)
노동일, “법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경희법학」 제47권 제2호(2012)
문재완,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2012)
이종기,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셜미디어 사용 - 미국 연방법원 행위규범위원회 권고의견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사법소식」 제94호(2014)
이현환, “미국의 법관윤리장전(모델) 연구(I) - 기구와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2호(2005)
지성우·최윤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의 원칙에 대한 시론적 고찰 - 트위터의 이용사례 분석을 기초로 한 내용규제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3호(2013)

76) 현재 법원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주요 기술로 1. 모바일 컴퓨팅, 2. 클라우드 컴퓨팅, 3. 빅데이터와 분석, 4. 전자기록관리시스템, 5. 소셜 미디어 등이 제시되고 있다; Norman H. Meyer, Jr., *Supra Note*, at 2.

표호건, “기피제도의 운영 현황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홍익 법학』 제13권 제3호(201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보도자료(2012년 5월 17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보도자료(2015년 3월 11일)

Adam Cohen, Social Media and Ediscovery: Emerging Issues, 32 Pace L. Rev. 289(2012)

Benita P. Collier, Privacy on the Internet: What is Reasonable in a Wired World?, 53 Prac. Law. 17(2007)

Beth C. Boggs, Misty L. Edwards, Does what happens on facebook stay on facebook? Discovery, Admissibility, Ethics, and Social Media, 98 Ill. B. J. 366(2010)

Christopher E. Prker, Travis B. Swearingen, “Tweet” me your status: Social media in discovery and at trial, 59-FEB Fed. Law. 34(2012)

Norman H. Meyer, Jr., Social Media and the Courts: Innovative Tools or Dangerous Fad? A Practical Guide for Court Administrators, International Journal for Court Administration(2014)

Thomas Roe Frazer II, Social Media: From discovery to marketing-A primer for lawyers, 36 Am. J. Trial Advoc. 539(2013)

Shira A. Scheindlin, Daniel J. Capra, ELECTRONIC DISCOVERY AND DIGITAL EVIDENCE CASE AND MATERIALS Second Edition, WEST(2012)

Thaddeus A. Hoffmeister, Social Media in the Courtroom, Praeger(2014)

CCPIO, 2014 CCPIO New Media Survey A Report of the Conference of Court Public Information Officers(2014)

CCPIO, New Media and the Courts - The current status and a look at the future(2010)

Working Group on Electronic Document Retention & Production, Primer on Social Media, The Sedona Conference(October 2012)

〈참고 웹사이트〉

<http://www.pewinternet.org/three-technology-revolutions/>

<http://www.scourt.go.kr/portal/news>

[http://www.newsis.com/ar__detail/view.html?ar__id=NISX20150212__0013475980
&cID=10201&pID=10200](http://www.newsis.com/ar__detail/view.html?ar__id=NISX20150212__0013475980&cID=10201&pID=10200)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22413492882320&
outlink=1](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22413492882320&outlink=1)

<http://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_id=N1002837408

[http://www.law.du.edu/documents/msla/Social-Media-and-the-Courts-NMeyer
__IJCA-v6-no1-June-2014.pdf](http://www.law.du.edu/documents/msla/Social-Media-and-the-Courts-NMeyer__IJCA-v6-no1-June-2014.pdf)

[http://www.ncsc.org/Topics/Media/Social-Media-and-the-Courts/State-Links.
aspx?cat=Social%20Media%20and%20the%20Courts](http://www.ncsc.org/Topics/Media/Social-Media-and-the-Courts/State-Links.aspx?cat=Social%20Media%20and%20the%20Courts)

[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social media of judges

Kim, Do-Hoon

Duksung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Recently, a lot of people use social media in a variety of areas, and the people who use it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in the future. In contrast, there is a negative view about what the judge is to use social media. This

is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various problems occur due to the nature of social media and the specific status of the judge.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limit entirely judge's use of social media because the potential problems. To prohibit the use of social media of judges could prevent judges from recognizing the community correctly in respect that social media is already established as the leading means of communication. And Judges should have the expertise for social media in respect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social media is expected to be settled down as a typical evidence.

Therefore Judges should not be close to the social media and also not be away from the social media. So, it is reasonable to judges encouraged to use social media appropriately and to try to provide improved way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related standards.

This article summarized and reviewed the following topics. First, this article briefly summarized the definition of social media, the characters of social media, problems caused by the use of social media of judges, and the awareness and the status of the use of social media of judges. Second, this article summarized the current rules applicable on the use of social media of judges. Third, this article reviewed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limitations, and improvement. Forth, this article reviewed the judicial recusal due to the use of social media of judges.

Key words : Judge, Court, Social Media, Code of ethics for judges, Civil Procedure